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청소년에 대한 중독성 콘텐츠 제공 제한〉
■ 김장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816호)

2024.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청소년에 대한 중독성 콘텐츠 제공 제한(안 제42조의4 신설 등) ...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장겸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7. 17.

다. 회 부 일 : 2024. 7.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소년을 포함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선호하는 콘텐츠 특성에 근거한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의 지속적인 노출로 SNS 중독, 확증 편향 등 청소년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특히 지난해 미국 41개 주 정부가 소셜미디어 업체를 상대로 청소년 SNS 중독의 책임을 물으며 소송을 진행하는 등 청소년 정신건강 피해의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국내 10대 청소년의 스마트폰 하루 이용시간이 지난해에 비해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미디어 중독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알고리즘 게시물의 알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알고리즘 게시물이 아닌 시간순으로 콘텐츠가 노출되도록 하여 소셜미디어의 중독성과 부작용으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42조의4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청소년에 대한 중독성 콘텐츠 제공 제한(안 제42조의4 신설 등)

가. 개정안 요지

- “중독성 콘텐츠”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제1항 제14호).
-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중독성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1조 제1항).
- 중독성 콘텐츠를 제공하는 SNS 사업자(“중독성콘텐츠제공자”)는 청소년의 서비스 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가 없는 경우 중독성 콘텐츠가 아닌 시간순으로 콘텐츠를 노출하도록 하며, 특정 시간에 알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42조의4).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중독성콘텐츠제공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6조 제3항 제3호의2).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3. (생략)	제2조(정의) ① ----- -----. 1. ~ 1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u><신설></u> ② (생략)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14. “중독성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회관계망서비스(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를 제공하는 자(이하 “사회관계망서비스제공자”라 한다)가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① ----- ----- -----중독성 콘텐츠·음란----- ----- ----- ----- -----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42조의4(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등) ① 중독성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 회관계망서비스제공자(이하 “중독성콘텐츠제공자”라 한다) 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청소년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한다. ② 중독성콘텐츠제공자는 청소 년 회원의 법정대리인 동의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 독성 콘텐츠가 아닌 시간순으 로 콘텐츠가 노출되도록 하고 특정 시간에 알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6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u><신설></u>	제7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42조의4제1항을 위반하 여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현행	개정안
4. ~ 25. (생략) ④ (생략)	<u>확인하지 아니한 자</u> 4. ~ 2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스마트폰의 보급 확산 등에 따라 청소년의 대다수가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음.
 -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2년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0대 청소년의 SNS 이용률은 78.1%에 달하여 2019년 대비 13.4%p 증가함¹⁾.
- 그런데 최근 알고리즘에 기반한 SNS가 과의존을 유발하는 등 청소년의 인지 및 정서 등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3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SNS 이용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비율은 청소년(만 10~19세)이 47.7%로 다른 세대(성인 31.6%, 아동 20.4% 등)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²⁾.
 - 2024년 1월 미국 연방 상원에서 ‘빅테크와 온라인 아동 성 착취’를 주제로 열린 청문회에서는 SNS가 아동 보호를 위한 책임을

1) 한국언론진흥재단, 「2022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조사」, p.102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p.65.

다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Meta)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기도 하였음.

- 또한 유럽연합은 추천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플랫폼이 아동의 행동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을 들어 2024년 5월부터 메타를 상대로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

○ 이에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SNS 이용 관련 알고리즘을 제한하기 위한 입법이 제정·추진 중인 상태임.

- 2024년 7월 미국 상원에서는 플랫폼 기업이 미성년자에 대하여 비슷한 콘텐츠를 자동재생하는 기능을 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아동 온라인 안전법(KOSA)’을 통과시켰음³⁾.
- 또한 미국 뉴욕주는 부모의 동의가 없는 경우 18세 미만 이용자에게 알고리즘 기반 콘텐츠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였음⁴⁾.
- 그 밖에 호주, 영국, 프랑스 등에서도 청소년의 SNS 제한 또는 금지를 위한 조치를 검토 중임⁵⁾.

○ 이러한 최근의 추세 및 세계적 입법 동향 등을 고려할 때, 청소년에 대한 알고리즘 기반 추천 정보 제공을 금지함으로써 SNS가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3) 한국일보, “SNS, 유해물로부터 미성년자 보호” 강력 규제법, 미 상원 통과는 했지만...’, 2024.8.1.

4) 한국경제, “알고리즘 거부권 보장하라”... ‘디지털 감옥’ 탈출구 찾는 지구촌’, 2024.8.4.

5) 세계일보, “‘청소년에 해로워’... ‘미성년 SNS 금지’ 규제의 칼 뽑았다”, 2024.7.27.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취지와 함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알고리즘 또는 콘텐츠의 실질적 유해성과 무관하게 모든 알고리즘 기반 콘텐츠를 중독성 콘텐츠로 정의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임.
- 개정안은 ‘중독성 콘텐츠’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음.
- 알고리즘을 활용한 정보통신서비스가 이용자의 선호에 부합하는 콘텐츠만을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몰입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는 하나,
알고리즘은 콘텐츠 추천 과정에서 이용자의 선호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의 유사성, 다른 이용자들의 콘텐츠 이용 빈도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할 수 있고, 이 중에는 이용자의 서비스 중독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경미한 요소도 존재함.
- 이를 고려할 때, 알고리즘 또는 이를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의 내용과 무관하게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콘텐츠 일체가

이용자, 특히 청소년에게 과의존 등 병적인 상태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또한 알고리즘 기반 콘텐츠 제공은 이용자가 선호하는 정보나 이용자에게 보다 적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만큼, 이를 제한하는 경우 청소년의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알고리즘 자체의 유해성 여부 및 청소년에 대한 제한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함께, ‘중독성 콘텐츠’가 보다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되도록 정의 규정을 수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와, 유해콘텐츠의 범위 확대 및 규제 강화,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등 청소년의 자유로운 서비스 이용을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둘째, ‘청소년’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개정안은 중독성콘텐츠제공자가 서비스에 ‘청소년’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면서, 청소년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그런데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⁶⁾,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등⁷⁾, 현재 법률마다 청소년의 범위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에서 청소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용 대상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임.

○ 또한, 개정안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로 정의하고 있음.

○ 그러나 정보통신망의 이용 자체가 정보의 검색 및 송·수신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⁸⁾, 개정안의 정의에 따르면 모든 정보통신서비스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 개정안은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서 수익적 성격의 규정에 비해 명확성의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므로⁹⁾, 청소년의 범위와 사회관계망서비스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한정함으로써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6)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8) 정보통신망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9) 현재 1992. 2. 25. 89헌가104

- 셋째, 안 제42조의4 제2항에 대해 의무이행확보수단을 규정하지 않는 경우 실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보임.
- 개정안은 안 제42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조 제2항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지 못한 청소년에 대해 시간순 콘텐츠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등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에 따르면 사업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만 하면 그 후에 동의를 받지 못한 청소년에 대해 시간순 콘텐츠 제공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별도의 제재수단이 없으므로,
안 제42조의4 제2항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 등 의무이행확보 수단을 규정하지 않는 경우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임.
- 넷째, 개정안과 같이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 방식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유, 특히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및 알 권리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 의견¹⁰⁾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10)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의견 참조

-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소년이 중독성 콘텐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에 대한 알고리즘 추천 제한을 수용하는 입장임. 다만, 이용자의 다양한 관심사항에 대한 정보가 알고리즘을 통해 맞춤형으로 제공되었다고 하여 이를 유해한 ‘중독성’ 콘텐츠로 정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완될 필요가 있으므로, 나쁜 영향을 주는 콘텐츠로 중독성 콘텐츠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① 정보제공에 알고리즘을 활용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중독성 콘텐츠로서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이용자의 효용 증대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경시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 ②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반적으로 어렵게 하여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③ 연령 확인 절차로 비용 등 사업자 부담이 증가하고 관련 서비스 산업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230